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2018. 4. 17.

행정위원회

### 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: 2018년 4월 6일

나. 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18년 4월 12일

라. 상정일자: 제20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제1차 행정위원회(2018. 4. 16.)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재정국장 진정래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세법」의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산세(주택분)의 일시부과 가능 세액 범위를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·징수 가능하도록, 일시 부과 가능 세액범위를 확대.(안 제9조)

(10만 원 이하 → 20만 원 이하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최광목)

- 본 조례안은 근거법령인 「지방세법」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주요내용으로는,
  - 안 제9조(납기)에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·징수 가능하도록, 일시부과 가능 세액 범위를 기존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확대 개정하였음.
- 검토 결과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고지서를 한 해 두 번(7·9월) 부과함에 따라 이중과세 오해 및 민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### 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358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8. 4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「지방세법」 개정에 따라, 재산세(주택분)의 일시부과 가능 세액범위를 상향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·징수 가능하도록, 일시부과 가능 세액범위를 기존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상향함(안 제9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 : 「지방세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 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 : 원안동의

## 4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(2018.2.1. ~ 2.21. / 20일간) 결과 : 의견없음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중 “10만원”을 “20만원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납기)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해당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	제9조(납기) ----- ----- ----- 20만원 ----- ----- ----- -----.